

2010. 10. 14(목) 10:00

제173회 임시회
회의규칙 개정안 검토 보고서

《검 토 안 건》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2380
----------	------

발의년월일 : 2010. 10.

발 의 자 : 박종철 의원 등 19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議事관리, 회의운영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회의규칙에 따라 매번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를 재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①이는 법체계상 최하위격인 규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기능을 저촉하고 ②지나치게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③의원 개개인의 입법기관 으로서의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지방자치法意에 부합하도록 하며 나아가 의장의 議事정리권 회복으로 효율적 의회운영과 성숙된 지방의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 5. 11공포)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1조 등 5개 조문)
 - 제63조 → 제71조, 제55조제1항 → 제63조제1항, 제71조 → 제79조, 제78조 → 제86조, 제75조 → 제83조
- 의원의 의석배정, 본회의 개의일시, 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일정변경, 5분 자유발언,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시장 등의 출석요구, 집행부에 대한 질문 등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장의 권한을 저촉하고 있어 의장이 결정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일부 내용은 삭제(안 제3조 등 13개 조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로 한다.

제7조의2와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중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를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중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를 “의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중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를 “의장에게”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교섭 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를 “의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3조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50조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로 한다.

제66조제4항중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66조의2제3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제5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항”을 “제4항” 으로 하며 “제5항” 및 “제6항” 과 “제8항”을 삭제한다.

- ③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 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 제63조</u> -----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7조의2(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장의 직무협약) ① 의장은 법4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 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의회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위촉,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사전 각위원회 의견청취) 및 추천,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조사위원 회의 확정, 결산감사위원의 선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의원 배정 및 추천 등] ②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교섭단체 대표의원회의(이하“대표회담”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각 교섭단체나 그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위한 대표회담은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의로 제1당의 대표의원이 소집한다. ④ 대표회담은 협의결과 또는 합의내용은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 또는 관련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⑤ 대표회담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전체의원의 의사에 따른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 제3조(의석배정) ①----- <u>의회운영위원회와</u> ----- ----- ----- (삭 제) (삭 제)

[illegible]

현행	개정안
제68조의3(긴급현안 질문) ① (생략)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u>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u>을 경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어는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u>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u>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u>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u>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u>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생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71조 -----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78조 -- ② (생략) ③ ----- 법 제75조 -----	제68조의3(긴급현안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u>정한다.</u>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u>다만, 의장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79조 -----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86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83조 -----

검 토 의 건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등 제정 운영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등 제정 범위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임무)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법률적 판단

-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1991. 4. 11 규칙 제745호로 제정되고 11회 개정 되면서 의회 회의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치법규입니다.
-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 71조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 발의된 내용중 규칙 제9조의2(의장의 직무협의), 제15조의2(회의의 공개), 제16조제2항(의사일정의 작성),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의), 제66조제4항(시장 등의 출석요구) 등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의 의장의 직무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교섭단체 구성)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만 정의하고 있을뿐 교섭단체 운영과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장의 직무권한인 사무국 사무에 대하여 회의규칙에서 교섭단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회의규칙 제3조(의석배정), 제7조의2(연간 의사운영 기본일종 수립), 제13조(개의),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 제68조의3(긴급현안질문) 등의 개정안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위원회 업무와 중복되어 운영되는 내용으로 효율적 의회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의회내 발언(본회의)에 있어 회기별 시정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하여 집중적 의회내 의사결정을 위하여는 교섭단체 협의회간 조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5분 자유발언”, “집행부에 대한 질문” 조항에 있어서는 현행을 유지 보완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1.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법령 발췌 1부.
2. 자치단체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비교표 1부.
3. 회의규칙 주요내용 조문 비교표 1부.

□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령

1. 의장의 직무

-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2. 의원의 임무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임무)

-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회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위임사항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등 26종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자치단체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비교

의회명	교섭단체구성 및 기능	구성시기
성남시 (9)	○ 대표, 부대표, 정책간사, 대변인, 간사 등 ○ 주요기능 - 의사일정 협의 - 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 주요행사 사전 협의 - 질문·발언 등 협의 - 대표연설	제5대의회 (2006. 9. 5)
경기도 (15)	○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대변인 ○ 주요기능 - 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 주요행사 사전 협의 - 질문·발언 등 협의 - 대표연설 ※ 의사일정협의 없음	제4대의회 (1995. 9. 13)
서울시 (10)	○ 대표, 부대표, 정책위원장, 대변인, 원내총무 ○ 주요기능 - 질문·발언 등 협의 - 의사일정변경 협의 ※ 의장의 직무협의, 의사일정협의 없음	제6대의회 (2002. 7월)
안양시 (5)	○ 대표, 간사(사무총장) ○ 주요기능 - 회의규칙에 내용 없음	제5대의회 (2006. 7월)
수원시	교섭단체 없음	

의회명	교섭단체구성	주요내용	비 고
부천시	3인 이상 소속의원	- 상임위원 선임 - 5분 자유발언 - 대표연설	
고양시	-	-	
안산시	5인 이상 소속의원	-	
용인시	3인 이상 소속의원	-	
창원시	-	-	
전주시	-	-	
청주시	-	-	

□ 회의규칙 중 교섭단체 업무협의 주요내용

[참고자료 3]

협의내용	성남시	경기도	서울시	안양시
○ 직무협의	③각 교섭단체나 그대표위원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위한 대표회당은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제의로 제1당의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④대표회당은 협의결과 또는 합의 내용은 제1당의 대표위원이 의장 또는 관련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⑤대표회당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전체위원의 의사에 따른다			
○ 의사일정 작성	제16조 제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2조 제2항 ②한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제2항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 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3조 의장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면, 당일 일정의 순서 변경과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협의내용	성남시	경기도	서울시	안양시
○ 5분 자유발언	제31조의 2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집행 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자유발언 24시간 전까지 발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 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44조 ① 생략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 ①-②생략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 2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하되 시정 질문이 있는 회기 시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본회의 마지막 차수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발언시간의 제한	제33조①-② 생략 ③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30분 까지 발언 할 수 있다. ④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와 발언자를 정한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제46조(발언원칙)① 생략.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과 그 밖에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와 발언자를 정한다. ④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략 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경우에는 20분 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협의내용	성남시	경기도	서울시	안양시
○ 집행부에 대한 질문	제66조의 2 ①-② 생략 ③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할 수 있고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의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 하여야 한다.	제97조①-④생략 ⑤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의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의 질문순서를 질문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시정질문) ① 생략 ②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의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3.3.10) ⑥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내용	성남시	경기도	서울시	안양시
○ 집행부에 대한 질문	⑧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 순서를 질문일 3일 전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 일 2일 전 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68조의 2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98조(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는 회기 중에 의결로써 도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	관련조문 없음	관련조문 없음
○ 긴급 현안사항 질문	제68조의 3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대 집행 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조에서 “긴급 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97조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없음	관련조문 없음

협의내용	성남시	경기도	서울시	안양시
○ 긴급 현안사항 질문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긴급현안 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6.09.05>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97조를 준용한다.		